24. 12. 16. 오후 2:30 인쇄

재외국민2세제도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재외국민2세제도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재외국민 2세 제도' 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

아래 기준일 이후, 본인의 국내 체재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음

☞ 기준일

93.12.31. 이전 출생자: 2018.5.29.

94.1.1. 이후 출생자: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17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17세 이전에 1년의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이 통틀어 9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을 수 없음.

어떤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재외국민2세' 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을 해주는 기관: 관할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국외 거주자: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국내 체재자: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구비서류: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체류자격(증): 병역의무자 및 부모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해외이주신고서'

출입국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24. 12. 16. 오후 2:30 인쇄